

## 분과위원회 설치(안) 회의자료 - ④ 기타 분과위원회

### 1.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또는 법원구성원 일·가정양립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 최근 몇 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8. 11. 21. ‘고 이승윤 판사의 장례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또는 법원구성원 일·가정양립분과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법원본부와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함.

#### 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0조에서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한 취지는 사법행정 기능이 인사행정 기능과 결합하여 권력화 또는 남용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인사운영의 밀행성, 인사기준의 비투명성 등으로 인한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임.
- 법관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도 인사행정의 권력화로 인한 사법행정 남용 위험을 차단하고, 인사운영의 밀행성,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법원본부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